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6누274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감사원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295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변 론 종 결 2007. 3. 14.

판 결 선 고 2007. 3. 28.

주 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는 2001. 9. 21.부터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도입사업(이하 '헬기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국방부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 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위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4. 9.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①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② 감사결과 요구사항, ③ 감사결과보고서 개요, ④ 감사결과보고서 목차, ⑤ 감사결과보고서 중 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련 부분, ⑥ 감사결과보고서 표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7.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일체(감사결과보고서, 목차, 감사실시 개요 포함)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

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4.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1. 18.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법 제13조 제4항 위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단지 군사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저히 해하는지, 어떤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공개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

법 제14조에 의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생산된 자료는 군사기밀지정권자인 국방부장관 등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제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04. 3. 25.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의결을 거친 후 2004. 3. 29.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하여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①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작전요구성능, ②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개발사업비와 관련된 것, ③ 헬기도입사업의 전제가 되는 우리나라 헬기의 성능, 기술수준 및 각국의 헬기에 대한 비교 검토, ④ 헬기도입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위와 관련된 것, ⑤ 헬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된 것, ⑥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관련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 제3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할 수 되어,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비공개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가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충돌되는 법익과 함께 비공개 사유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비공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비밀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 전부가 군사 2급 비밀로 규정된 이상, 이 사건 감사보고서 전부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현 _____

판사 김종수 _____

판사 이철규 _____